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9호(호외) 2023. 12. 12.(수)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2439호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도서관법」 제3조제2호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반영
 - 도서관 구분 인용 조항(제4조제2항제1호가목)
 - 도서관자료 정의 인용 조항(제3조제2호)
 -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요건 인용 조항(별표 2)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3. 11. 22. ~ 2023. 12. 12.(20일간)

6. 의견제출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도서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도서관과(우 57734)

- 전 화 : 061-797-3850

- 팩 스 : 061-797-4154

- 전자우편 : jungkh09@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 대비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 제1호가목-----. 2. -----「도서관법」 제3조제2호----- ----- -----. 제6조(설치 기준) ----- ----- --- 별표 2-----.